

[약사법분쟁]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사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

두1178 판결



약국의 개설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그 문언 자체의 간결성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있어 상당한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https://blog.naver.com/kasanlaw/221134304299>), '입지'가 사실상 약국 경영 성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약국 개설을 원하는 약사와 지자체 사이의 다툼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판결은 대법원에서만 무려 4년 가까이 계속된 사건입니다.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의약분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더욱 구체화한 판결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 사실관계

하급심 판결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판결에 나타난 간략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지: 의원 4곳이 입주한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단층 건물

■ 지자체의 등록거부 사유: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 동 항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단: 등록거부 적법

① 이 사건 단층 건물은 이 사건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 위에 있고, 이 사건 4층 건물의 부속 건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4층 건물의 출입구에서 곧바로 이 사건 단층 건물로 출입할 수도 있음

② 이 사건 4층 건물을 드나드는 제3자로서는 이 사건 4층 건물과 이 사건 단층 건물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단층 건물과 이 사건 4층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단층 건물이 이 사건 4층 건물과 공간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 법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함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음

여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본 판결은 약사법 상 약국 개설 불가 사유의 해석에 있어 적용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을 단순한 물리적 독립(건물 자체의 분리)이 아닌 약국의 의료기관에 의 종속성 및 담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규정이 정한 의료기관은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힌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서 4층 건물 내 여러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과연 문제의 약국 개설 부지가 그 의료기관들 중 어떠한 의료기관에 종

속되거나 상호 담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기 환송한 것으로 건물 자체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시합니다. 동 판결은 향 후 유사 사건에 있어 판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판결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유제형 변호사

약사변호사, 약사법, 의료법 자문, 형사소송, 행정소송, 실무적 대응전략

T. 02-591-0657 E. yjh@kasanlaw.com H. www.kasanlaw.com